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

2018년 1월 1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배포즉시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 1. 18.(목)	담당부서	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
담당과장	채규남 과장(044-203-5860) 고재강 과장(044-203-5870) 정병락 과장(044-203-5880)	담 당 자	박수진 사무관(044-203-5863) 이선덕 주무관(044-203-5877) 김종윤 사무관(044-203-5882)

무역위원회, 대만·태국·UAE산 PET 필름에 대해 5년간 3.67~60.95% 덤핑방지관세 부과 최종판정

□ 무역위원회(위원장 신희택)는 '18.1.18.(목) 제373차 회의를 개최해,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*를 부과중인 대만·태국·아랍에미리트(UAE) 산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(PET: Polyethylene Terephthalate) 필름에 대해 5년간 3.67~60.95%**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판정했다.

* 대만, 태국, UAE산 PET 필름에 대하여 '17.11.1일 부터 3.92~51.86%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중(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7-27호('17.11.1))

** (대만) 신콩 및 그 밖의 공급자 8.68%, (태국) 에이제이피 3.71%, 폴리플렉스 3.67%, 그 밖의 공급자 3.68%, (UAE) 플렉스 7.98%, 제이비에프 60.95%, 그 밖의 공급자 51.48%

○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(PET) 필름은 포장용(스낵포장용 등), 산업용(태양광 백시트, 접착테이프 등), 광학용(LCD, PDP 소재 등), 그래픽용 등 우리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, 국내 시장규모는 '16년 기준 약 1조원(약 29만톤)이고 대만·태국·아랍에미리트(UAE) 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% 수준이다.

○ 아랍에미리트(UAE) 제이비에프는 타 공급자 대비 높은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 받았으나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최종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

□ 신청인은 대만·태국·아랍에미리트(UAE) 산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(PET) 필름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판매가격이 하락해 영업이익이 악화하는 등 산업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'17.2.22일 덤핑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원회는 11개월간 서면조사, 공청회, 국내외 실사 등을 진행했다.

○ 무역위원회가 세계무역기구(WTO)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한 결과,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손익이 악화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했다.

○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('17.4.17.)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□ 이와 함께, 무역위원회는 목욕의자 특허권·디자인권 침해 조사와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조사에 대해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.

○ 무역위원회는 ㈜동해상사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한 목욕의자*를 대만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국내 A업체에 대해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물품의 수입·판매 중지 명령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내렸다.

*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형태의 목욕 보조기기

○ 또한 무역위원회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볼베어링씰*을 수입한 개인사업자 B에 대해 원산지 거짓 표시의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고, 해당 물품의 수입·판매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9만원을 부과했다.

* 볼베어링의 윤활유 유출 또는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해 장착되는 환형 밀봉수단

□ 한편, 무역위원회는 ㈜가인국제무역이 국내업체 C사를 상대로 '17.11.29 조사신청한 백주(白酒)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. 피신청인 C사는 신청인 ㈜가인국제무역의 백주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○ 지난 '17년 3월부터 지식재산권자가 세관장에게 지재권 침해 혐의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한 후 1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면 세관의 통관보류가 계속 유지되도록 관세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.

○ 이번 백주 상표권 침해 조사사건은 제도 개선후 첫 사례로서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관세청의 통관보류 제도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지재권 침해로 인한 산업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에 그 의의가 있다.

【참고】 1. 대만, 태국 및 UAE산 PET 필름 반덤핑조사 개요
2. 목욕의자 특허권·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
3.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
4. 백주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피해조사과 박수진 사무관(044-203-5863), 덤핑조사과 이선덕 주무관(044-203-5877), 불공정무역조사과 김종윤 사무관(☎044-203-58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대만, 태국 및 UAE산 PET 필름 반덤핑조사 개요

□ 조사 개요

○ 신청인(신청일) : SKC㈜, 도레이첨단소재㈜, 코오롱인더스트리㈜, ㈜효성, ㈜화승인더스트리('17.2.22.)

○ 피신청인 : (대만) 신콩, (태국) 에이제이피, 폴리플렉스, (UAE) 플렉스, 제이비에프

○ 조사대상물품

- 품명 : PET 필름(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)
 * 단, 코팅 두께가 0.25㎛를 초과하는 것, 금속증착 필름 및 유채색 필름은 제외
- 용도 : 포장용, 광학용, 그래픽용, 태양광용 등으로 사용
- HSK 분류 : 3920.62.0000, 3920.69.0000

□ 국내시장규모('16년) : 약 1조원 / 약 29만톤

- 시장점유율(물량) : 국내산 약 75%, 대만·태국·UAE 약 10%, 기타 15%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□ 공급자별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(안)

공급국	공급자	최종 덤핑률(안)
대만	신콩 (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., Ltd.)	8.68%
	그 밖의 공급자	8.68%
태국	에이제이피 (A.J. Plast Public Company Limited)	3.71%
	폴리플렉스 (Polyplex (Thailand) Public Company Limited)	3.67%
	그 밖의 공급자	3.68%
UAE	플렉스 (Flex Middle East FZE)	7.98%
	제이비에프 (JBF RAK LLC)	60.95%
	그 밖의 공급자	51.48%

□ 향후계획

○ 기재부 최종결과 관보게재('18.4.16.까지)

참고 2 목욕의자 특허권 ·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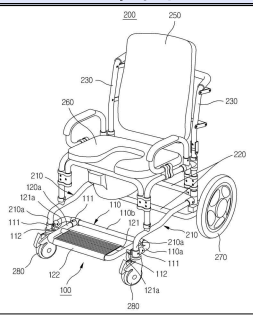
□ 조사개요

○ 신청인: ㈜동해상사

○ 피신청인: A社(수입·판매업체)

○ 조사대상기간: ’14. 1. 1. ~ ’17. 9. 24.

○ 조사대상물품: 목욕의자(HS코드: 9401.79.9000)

등록특허	등록디자인	조사대상물품
	 디자인의 대상물품: 좌변용 커버	

* (특허발명) 발판의 제1프레임과 제2프레임을 무게중심이 안정되도록 결합하여 휠체어의 전도 등 안전사고를 방지

□ 조사경과

○ 조사신청서 접수(’17.9.11.), 조사개시결정(’17.9.25.)

○ 당사자 의견교환(’17.9월~12월), 현지조사(’17.11월)

□ 조사결과

○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한 목욕의자 제품을 대만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판매한바, 이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함

> "**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(이하 ’법’)**"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,
> - 특허권·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침해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

○ 이는 법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(시정조치 명령, 과징금 부과) 대상임

참고 3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

□ 조사개요

○ 조사개시: 부산세관 불공정무역행위 혐의* 통보로 직권조사 개시

* ’17. 3월 피조사인은 **’KOREA’가 표시된 볼베어링씰**(약45,000개, 원가 약 1백3십여만원 상당)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려다 적발, ’17.9.5 부산세관에서 무역위로 통보

○ 피조사인: 개인사업자 B(수입업체)

○ 조사대상기간: ’12. 9. 25. ~ ’17. 9. 24.

○ 조사대상물품: 볼베어링씰*(HS코드: 8482.90)

조사대상물품

볼베어링씰에 ’KOREA’가 표시되어 있음

* 볼베어링 내부 윤활유 유출 및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환 형태의 밀봉수단

□ 조사경과

○ 직권조사개시결정(’17.9.25), 피조사인 답변서 제출(’17.10월 ~ 11월)

○ 무역위 개최 예정 및 최후 의견제출 통지(’17.12.15)

□ 조사결과

○ 피조사인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볼베어링씰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바, 이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함

> "**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(이하 ’법’)**"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,
> -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등을 수입 하는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

○ 이는 법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(시정조치 명령, 과징금 부과) 대상임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참고 4 **백주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**

□ 조사 개요

○ **(신청인)** ㈜가인국제무역

○ **(피신청인)** C사(수입·판매 업체)

○ **(신청내용)**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

○ **(조사신청일)** ’17. 11. 29.

○ **(조사개시 결정일)** ’18. 1. 9.

○ **(조사대상물품)** 백주(HS코드: 2208.90.9000)

□ 향후 계획

○ **(조사·판정)** 서면조사, 현지조사 등 조사절차를 거쳐 조사개시 후 6월 이내 판정, 침해 판정시 수입·판매 중지 및 과징금 부과 등